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28
----------	--------

제출년월일 : 2024.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민간운영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운영 위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8. 29.~9. 18.(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5)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4. 9.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반려견 놀이터의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u>
<u>제27조 (생 략)</u>	<u>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u>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27조제1항,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인력 4명(팀장1, 팀원3)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민간위탁금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소계(b)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총비용(a-b)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	-	-	-	-	-
자체 수입	소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지방채		-	-	-	-	-	-
민간자본		-	-	-	-	-	-
기타		-	-	-	-	-	-
합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김성현
연 락 처	02-3153-8543

Ⅱ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세출예산(B)			330,000
인건비			185,800
기본급	팀장(2급)	3,030,000원×12개월×1명=36,360,000원	120,160
	팀원(5급)	2,344,000원×12개월×1명=28,128,000원	
	팀원(관리직)	2,320,000원×12개월×2명=55,680,000원	
수당	명절휴가비	3,030,000원×120%×1명=3,636,000원	12,016
		2,344,000원×120%×1명=2,812,800원	
		2,320,000원×120%×2명=5,568,000원	
	초과근무수당	(3,030,000원×110%) / 209시간 × 1.5 × 20시간 × 1명 × 12개월	18,974
		(2,344,000원×110%) / 209시간 × 1.5 × 20시간 × 1명 × 12개월	
		(2,320,000원×110%) / 209시간 × 1.5 × 20시간 × 2명 × 12개월	
	연차미사용 수당	(3,030,000원÷20일)×1명×5일=757,500원	2,504
		(2,344,000원÷20일)×1명×5일=586,000원	
(2,320,000원÷20일)×2명×5일=1,160,000원			
4대 보험	국민연금	151,158,800원×4.5%=6,802,000원	17,125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1,158,800원×3.545%=5,359,000원	
	장기요양보험료	151,158,800원×3.545%×12.81%=686,000원	
	고용	151,158,800원×1.8%=2,721,000원	
	산재	151,158,800원×1.03%=1,557,000원	
퇴직금적립금		(3,030,000원÷20일)×1명×30일=4,545,000원	15,021
		(2,344,000원÷20일)×1명×30일=3,516,000원	
		(2,320,000원÷20일)×2명×30일=6,960,000원	
행사운영비			90,000
행사프로그램	하절기(1개월) 물놀이장 운영		50,000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40,000
일반운영비			54,200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300,000원×12개월=3,600,000원	21,800
	캠핑용품 구매	300,000원×12개월=3,600,000원	
	청소등시설관리용품	300,000원×12개월=3,600,000원	
	사무기기 렌탈비	500,000원×12개월=6,000,000원	
	피복비	125,000원×4명×2회=1,000,000원	
	홍보비	온.오프라인 홍보 4,000,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00원×12개월=2,400,000원	32,400
	수도요금	200,000원×12개월=2,400,000원	
	통신요금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시설 유지보수비	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방역 및 소득	200,000원×12개월=2,400,000원	